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012. 6. 22)

2013. 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 목 차 】

I. 제안개요 .....	1
1. 제안경위 .....	1
2. 제안이유 .....	1
3. 주요내용 .....	2
II. 검토의견 .....	3
1.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여부 확인의무 부과 ...	3
2.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 여부 확인 및 서비스 제한 .....	10

## I. 제안개요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12. 6. 22.

다. 회부연월일 : 2012. 7. 9.

### 2.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사업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외사업자들에 의한 음란·폭력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등이 청소년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어플리케이션 등의 유통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정보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의3제1항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32조의3제2항 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단수단을 재설치될 때까지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제3항 신설).

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정상적인 작동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일시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제4항 신설).

## II. 검토의견

### 1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여부 확인의무 부과 (안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 (1) 개정안 요지

-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와 정상적 작동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안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4조제4항제4의2호 신설).

####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3(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차단) ① 전기통신사업자(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미성년자(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5. ~ 17.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상적 작동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5. ~ 17. (현행과 같음)

### (3) 검토의견

#### [개정안의 취지 검토]

- 2011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안드로이드 오픈마켓 내 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총 18,101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1.6배 증가한 수치임.

또한 이러한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성인인증장치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총 212건(1.2%)에 불과하였으며, 이 또한 법에 규정된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처럼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선정성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의 쟁점별 주요내용>

의무주체 범위	전기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초고속인터넷사업자 등)
의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여부 확인의무(안 제32조의3제1항)</li> <li>· 정상작동여부의 주기적 확인의무(안 제32조의3제2항)</li> </ul>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의무주체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검토]

-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sup>1)</sup> 차단수단의 설치여부 및 정상적 작동여부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sup>2)</sup>의 범위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포함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각성은 유선·무선의 구분 없이 동일하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차단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은 있음.
- 다만, 개정안의 목적이 개인소유의 성격이 강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에 유통되는 음란·선정성 정보를 규제하는 것이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미성년자(보호자 포함)와 계약할 때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이동통신역무가 주된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무대상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한정하더라도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설치해야 할 주체와 해당 기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특히, 단말기 자급제<sup>3)</sup> 시행으로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역무 계약이 분리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 개정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규제의 도입이므로 「민법」상의 용어인 ‘미성년자<sup>4)</sup>’ 대신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근거법인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sup>5)</sup>’으로 대체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차단 대상에 대한 검토]

- 개정안 제32조의3은 차단의 대상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의 취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유통이 허용된 정보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정보이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만 차단할 경우에는 이보다 유해성이 높은 불법 음란 정보는 차단이 어려워짐.

---

3) 단말기 자급제 :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로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4)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시행일 : 2013.7.1.]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정보 이외의 유해정보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단대상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sup>6)</sup>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1호6)에 규정된 음란정보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검토]

- 현재 이동통신기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하는 서비스는 201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특정 OS(안드로이드)를 탑재한 기기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불완전하다는 한계가 있음.
- ※ 아이폰 등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단말기의 경우, 폐쇄된 운영체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한 기술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안드로이드폰 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서비스 현황>

제공자	서비스명	서비스 형태	가격
SKT	T 청소년 안심 서비스	네트워크 차단 + 앱 설치	무료
KT	올레 자녀폰 안심 서비스	앱 설치	2,200원
LG U+	LG U+ 자녀폰 지킴이	앱 설치	2,200원
MOIBA (한국무선인터넷 산업연합회)	스마트보안관	앱 설치	무료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따라서 현재 보급 중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불완전함을 고려할 때, 제도 초기에는 의무조항만을 두고 향후 규제 집행 실태 및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개정안 요지

-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단수단이 재설치될 때까지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제3항 신설).
-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정상적인 작동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일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제4항 신설).

(2) 개정안 조문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32조의3(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차단)</u></p> <p>③ <u>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단수단이 재설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u></p> <p>④ <u>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u></p>

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정상적인 작동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일시제한할 수 있다.

### (3) 검토의견

#### [차단수단 작동여부의 주기적 확인의무에 대한 검토]

- 이용자가 ‘사설(외부) WiFi’를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단말기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서비스 제한에 대한 검토]

-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 이용자가 설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이용  
 도중 삭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이 작동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작동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제한  
 하는 것은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013. 4.  
 11)」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프로  
 그램 제공을 의무화하고, 차단수단 미작동시 전기통신역무 이용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법안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담 당 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 현 정
연 락 처	02-788-2583 (FAX 02-788-3360)